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. 8. 9 선고 2021가단109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소송대리인 H

6. I

7. J

8. K

9. L

10. M(개명 전: N)

11. O

변론 종결2022. 7. 19.

판결 선고2022. 8. 9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가단1126호 사건의 판결 중 제1의 가항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. 피고 C, D, E, F, G은 각 13/9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I는 3/9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J, K, L, O는 각 2/91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한도 내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P은 1940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)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)을 신축하였다.

나. 망 P은 1991. 2. 27. 사망하였고, 원고와 피고들은 망 P의 공동상속인이다.

다. 원고는 1991. 5. 29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철거와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(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가단1126)을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20. 5. 26.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(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.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, D, E, F, G은 각 13/9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I는 3/9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J, K, L, M, O는 각 2/9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,

나. 피고 D, F은 각 439,600원을, 피고 L는 67,600원을 각 지급하고,

다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철거일까지, 피고 D은 2019. 12. 24.부터 월 14,7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피고 F은 2019. 12. 20.부터 월 14,7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피고 L는 2020. 3.

7.부터 월 2,2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.

가.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확인 청구 부분

원고는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.

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,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, 위험이 있고 그 불안,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(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). 또 민사소송법은 하자 있는 판결이라도 확정 전이면 상소로, 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를 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그 확정판결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.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의 강제집행 불능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 설령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이라고 보더라도,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,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판결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.

나. 이 사건 소 중 피고 M에 대한 부분

원고는 2022. 6. 24.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피고 M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바, 이 사건 소 중 피고 M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다. 이 사건 소 중 피고 C, D, E, F, G, I, J, K, L, O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

1)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C, D, E, F, G, I, J, K, L, O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[원고는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에 원고의 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 철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이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에 기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집행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 전부를 철거시킬 수 있으므로(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537 판결 참조), 받아들일 수 없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강호

별지